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2-248호**

환경부고시 「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」(제2022-138호, 2022.7.15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 
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0일

환경부장관

**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개정**

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부칙(환경부고시 제2021-295호) 제1조제2호 후단에 “다만, 크롬산 스트  
론튬(Strontium chromate; 7789-06-2)을 컬러강판·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 
는 경우(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) 및 이 목적으로 제조, 수입, 판매,  
보관·저장,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 
시행한다.” 를 신설한다.

**부 칙**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